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3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박균택 · 박 정
임오경 · 윤준병 · 김태선
이수진 · 이용우 · 박정현
민병덕 · 안호영 · 김남근
강준현 · 전진숙 · 강득구
복기왕 · 최혁진 · 김우영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,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%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. 지열, 수열,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.

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, 지열,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,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

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,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제1항·제4항 및 제19조제3항).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후단 중 “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”를 “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,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도시가스 공급”을 “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”으로, “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”을 “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주된 난방 및 급탕 방식으로 정한 신축 건축물로서,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는 경우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2(가스의 수급계획) ① 시·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<u>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</u> 되어야 한다.	제18조의2(가스의 수급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,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<u>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</u> 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-----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-----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	제19조(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

의무) ①・② (생략)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	의무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주된 난방 및 급탕 방식으로 정한 신축 건축물로서,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는 경우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-	--